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7. 6 선고 2021가단1086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오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C(D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1. 3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 가. 위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 나. 위 목록 제8항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8,2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 가.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원고에게 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C은 E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다.

2) E 주식회사는 2003. 4. 15. F 유한회사에 C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F 유한회사는 2006. 10. 25. 주식회사 G에, 주식회사 H은 2011. 4. 26. I 유한회사에, I 유한회사는 2019. 2. 22. 원고에게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20.경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차전3843호로 위 양수금 “10,760,986원 및 위 금원 중 1,993,333원에 대하여 202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0. 10. 28. 확정되었다.

4) 2021. 5. 11.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의 액수는 11,089,780원 및 위 금원 중 1,993,333원에 대하여 2021. 5. 11.부터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나. C과 피고 등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1) 망 J는 2018. 10. 12.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K(3/11), 자녀인 피고(2/11), L(2/11), C(2/11) 및 망 M의 대습상속인으로 N(6/77), O(4/77), P(4/77)가 J의 재산을 각 지분별로 상속하였다.

2) 망 J의 상속인들은 2018. 11. 30.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 8. 위 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이전에 실행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의 Q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위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위 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의 취소

결국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8항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갑 제5호증의 8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별지 목록 제8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0.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목록 제11항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7.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책임재산)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갑 제5호증의 8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별지 목록 제8항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공동담보) 가액은 8,240,000원[(별지 목록 제8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30,000,000원 + 같은 목록 제11항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15,320,000원) $\times$ 2/11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의 합계액인 11,089,780원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사건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8,2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목 록

1. 경상남도 의령군 T 대 297㎡
2. 경상남도 의령군 U 전 1637㎡
3. 경상남도 의령군 V 전 555㎡
4. 경상남도 의령군 W 전 46㎡
5. 경상남도 의령군 X 전 26㎡
6. 경상남도 의령군 Y 임야 4165㎡
7. 경상남도 의령군 Z 임야 1733㎡
8. 경상남도 의령군 AA 답 128㎡
9. 경상남도 의령군 AB 답 588㎡
10. 경상남도 의령군 AC 답 417㎡
11. 경상남도 의령군 AD 답 463㎡
12. 경상남도 의령군 AE 답 416㎡
13. 경상남도 의령군 AF 답 393㎡. 끝.

